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6타경69 소형선박임의경매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9. 7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최현종 전자서명완료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최선순위 설정	2017.10.20.저당권			배당요구종기	2026. 8. 7.
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

점유자 성 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 분	점유의 권 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일자·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

<비고>
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

해당사항없음
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

해당사항없음

비고란

1.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어업허가권 포함
2. 어업허가(연안복합어업), 허가기간(2024.01.01.~2028.12.31.)
3. 선체, 기관, 의장품 등의 세부적 현황은 양호(감정평가서 참조)하며, 작동사항(정상운행 가능여부)은 확인을 요함
4.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은 미상임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소형선박의 표시

2026타경69

[물건 1]

1. 선박의 종류와명칭 : 동력선 아리스타호
 선　　적　　항 :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반월길 79 (격포리)
 어선번호 : 1710001-6458009
 선체재질 : 알류미늄합금
 총톤수 : 7.93
 기관의종류, 마력 및 대수 : 선박용디젤 기관 700.000마력 1대
 추진기의종류와 수 : 나선일체식 추진기 1기
 진수연월일 : 2017년 10월 18일
 보관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-14 앞 선착장
 보관방법 : 제3자 심길섭에게 보관

 제시외 1-1 V-PASS - 0㎡
 1-2 플로터 - 0㎡
 1-3 어군탐지기 - 0㎡
 1-4 어군탐지기 - 0㎡
 1-5 플로터 - 0㎡
 1-6 어군탐지기 - 0㎡
 1-7 송수신기 - 0㎡
 1-8 송수신기 - 0㎡
 1-9 제시외어업허가권 - 0㎡

감정평가액		390,947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10.26	390,947,000	39,094,700
2회	2026.12.07	273,663,000	27,366,300
3회	2027.01.18	191,564,000	19,156,400
4회	2027.03.08	134,095,000	13,409,500

1.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어업허가권 포함
2. 어업허가(연안복합어업), 허가기간(2024.01.01.~2028.12.31.)
3. 선체, 기관, 의장품 등의 세부적 현황은 양호(감정평가서 참조)하며, 작동사항(정상운행 가능여부)은 확인을 요함
4. 선박의 검사유효기간은 미상임

어업권 감정평가명세표

<기준시점 : 2026-08-26>

일련번호	어업권의 표시	어장의 면적 (㎡) 공부	어장의 면적 (㎡) 사정	감정평가액 단가	감정평가액 금액	비고
1	제시외 어업허가권	1식	1식	-	150,000,000	

어선번호 : 1710001-6458009
어선의 명칭 : 아리스타호
허가번호 : 부안 연안복합어업 제2024-00109호
어업의 종류 : 연안복합어업
조업구역 : 전라북도지사의 관할 수역
어업의 시기 : 01.01. ~ 12.31
포획.채취물의 종류 : 조피볼락, 삼치류, 쭈꾸미
허가기간 : 2024.01.01 ~ 2028.12.31

합 계	₩150,000,000.-

이 하 여 백